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다. 연임규정 수정(안 제15조제4항)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하여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당시 ‘낙후지역’이라는 용어를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3단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용어를 ‘저발전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안 제13조의2에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14.5.28. 「지방재정법」 개정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나 부칙으로 별도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18.12.31.까지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부칙을 근거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년 말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음.
- 안 제15조는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음.

- 안 제15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 안 제18조는 현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사항을 고려해 기존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18. 8. 16.~'18. 9. 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다만, 안 제13조2 및 안 제15조2를 신설하면서 가지번호 체계를¹⁾ 준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하여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가지번호는 ‘제00조의0’으로 규정해야 함.